

탬파 새빛 교회  
(NEW LIGHT CHURCH OF TAMPA)

# 헌법 및 규약(안)

## CONSTITUTION & BYLAWS

2023년 7월 9일 개정(REVISED)



NEW LIGHT BAPTIST CHURCH

탬파새빛교회

## 목 차

<b>헌법 (Constitution)</b>		<b>4</b>
<b>전문 (Preamble)</b>		<b>4</b>
<b>제 1 장</b>	<b>총칙</b>	<b>4</b>
제 1 조	명칭	4
제 2 조	위치	4
제 3 조	재단법인	4
제 4 조	목적	4
제 5 조	신앙고백	5
제 6 조	교회의 약속	5
제 7 조	교회의 정치 및 관계	5
<b>규약 (Bylaws)</b>		<b>6</b>
<b>제 1 장</b>	<b>회원 (교인)</b>	<b>6</b>
제 1 조	정의	6
제 2 조	자격	6
제 3 조	의무	6
제 4 조	권리	6
제 5 조	제명	6
제 6 조	징계	7
제 7 조	투표 권리	7
<b>제 2 장</b>	<b>성도총회 (Congregational Assembly)</b>	<b>8</b>
제 1 조	총칙	8
제 2 조	정기 및 임시 성도총회	8
제 3 조	소집공고	9
제 4 조	안건상정	9
제 5 조	회의 정원 및 유회	9
제 6 조	의결 정족수	9
제 7 조	중요 사안	9
제 8 조	표결 및 개표 원칙	9

<b>제 3 장</b>	<b>교회직원</b>	<b>10</b>
제 1 조	담임목사	10
제 2 조	부목사	11
제 3 조	전도사	11
제 4 조	교회 직원	11
제 5 조	일반 직분자	12
<b>제 4 장</b>	<b>안수집사(Deacon)</b>	<b>12</b>
제 1 조	총칙 및 자격	12
제 2 조	피택	12
제 3 조	교육	13
제 4 조	총회의 인정 및 안수	13
제 5 조	임기 및 임무	13
제 6 조	시무정지 및 해임	13
<b>제 5 장</b>	<b>서리집사 (Deacon Acting)</b>	<b>14</b>
제 1 조	자격	14
제 2 조	임무	14
제 3 조	선출방법	14
제 4 조	임기	14
<b>제 6 장</b>	<b>장로 및 권사</b>	<b>15</b>
제 1 조	총칙	15
제 2 조	임무	15
제 3 조	자격, 임명 및 교육	15
<b>제 7 장</b>	<b>제직회 (Board Meeting)</b>	<b>16</b>
제 1 조	총칙	16
제 2 조	구성	16
제 3 조	임무와 역할	16
제 4 조	정기 및 임시 제직회	16
<b>제 8 장</b>	<b>교회행정</b>	<b>17</b>
제 1 조	총칙	17
제 1 항	자격	17
제 2 항	법정대리인	17
제 2 조	서기	17

제 3 조	회계 (재정팀장)	17
제 4 조	감사	18
제 5 조	회계연도	18
<b>제 9 장</b>	<b>위원회 (Committee)</b>	<b>19</b>
제 1 조	총칙	19
<b>제 10 장</b>	<b>교회기관 및 부서</b>	<b>19</b>
제 1 조	총칙	19
제 2 조	남/여 전도회	19
제 3 조	학부모회	19
<b>제 11 장</b>	<b>교회의 성례</b>	<b>20</b>
제 1 조	침례	20
제 2 조	주의 만찬	20
<b>제 12 장</b>	<b>헌법 규약의 개정 및 부칙</b>	<b>20</b>
제 1 조	개정 총칙	20
제 2 조	부칙	20
	<b>서명</b>	<b>49</b>

# 헌법 (Constitution)

## 전 문 (Preamble)

새빛교회 회원은 신앙원리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. 이 헌법은 회원 각자의 신앙을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하고 있다.

## 제 1 장

### 총칙

#### 제 1 조

#### 명칭

본 교회는 Florida 주법에 준하여 정식으로 법인화된 교회로서 본 교회의 명칭을 탬파 새빛교회 (New Light Church of Tampa) 라 칭한다.

#### 제 2 조

#### 위치

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이다.

#### 제 3 조

#### 재단법인

새빛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총회와 Florida 남침례회 총회, 한인 남침례총회 및 플로리다 남침례회 지방회에 가입되어 있다.

#### 제 4 조

#### 목적

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예배와 교육, 그리고 봉사 및 전도활동 등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돕고,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며,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교훈과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.

#### 제1항

본 교회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및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다.

#### 제2항

성경공부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교회에 유능한 주의 일군을 양성한다.

#### 제3항

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교회 생활을 배우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갖게 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한다.

## 제 5 조

### 신앙고백

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성도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생활하며 변화된 신앙을 고백한다. 본 교회는 1963 년도 남침례교단이 채택한 "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(The Baptist Faith and Message)"의 교리적 성명서에 동의 찬성한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각자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헌신하기로 결단한다.

**제 6 조**

**교회의 약속**

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,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경건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다음의 약속들을 맺기로 한다.

**제1항**

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,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며, 우리 교회의 성장과 영성을 촉진시키고, 예배 의식, 교리 및 말씀훈련을 지속하며, 헌금을 통해 목회를 지원하고, 교회의 사역과 구제,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.

**제2항**

우리는 또한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여 경건을 지속하며,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, 가족의 구원을 추구하며, 세상에서 거룩한 삶에 본을 보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,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한다.

**제3항**

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며, 기도하며, 성냄을 더디 하고, 화목함으로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진실하게 교제하기로 약속한다.

**제 7 조**

**교회의 정치 및 관계**

**제1항**

본 교회의 치리권은 성도총회에 있다.

**제2항**

교회에서 선출되고 권한을 받은 모든 위원회나 기관은 성도총회에 보고한다.

**제3항**

본 교회는 타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나 신앙노선이 같은 교회들과 상호 협조한다.

## 규약 (Bylaws)

### 제 1 장

### 회원 (교인)

#### 제 1 조

#### 정의

우리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이다. 우리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있어 자발적이며 자치적인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
#### 제 2 조

#### 자격

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역사를 믿는 18 세 이상의 자로서 우리 교회 입교 후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#### 제 1 항

#### 등록

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새빛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단하여 새 가족 훈련을 마치면 등록된다.

#### 제 3 조

#### 의무

#### 제1항

각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영적인 성숙과 개인 신앙 생활을 위해 적극 훈련하며 성도의 교제를 힘쓰고, 교회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성도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.

#### 제2항

올바른 헌금 생활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.

#### 제3항

성경 묵상과 가정 예배 및 개인 전도에 적극적으로 힘쓴다.

#### 제 4 조

#### 권리

#### 제1항

등록 교인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.

#### 제2항

등록 교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## 제3항

침례 교인은 교회의 부서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다.

#### 제 5 조

#### 제명

#### 제1항

타 교회로 이전 시

#### 제2항

타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상 결석한 자

#### 제3항

사망 시

**제 6 조            징계**

**제1항            목적**

본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. 어느 회원이 다른 회원의 과오를 발견하였다면 마태복음 18 장 15 절에서 17 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. 만약 상기 조치로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담임 목사와 제직회에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 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성도총회에 회부한다. 처벌보다는 구제가 회원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 2 항            효력**

징계 중인 회원은 본 규약 제 1 장 4 조에 명시된 회원(교인)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
**제 3 항            대상**

- a. 비도덕적이거나 비기독교적 행위, 혹은 성도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, 회원으로서의 교회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배하거나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자
- b. 교회 재정의 배임 및 횡령, 투자행위를 하는 자

**제 4 항            방식**

제직회의 검토를 거쳐 성도총회에 상정하고 투표인 3 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된다.

**제 5 항            회복**

징계되어 회원 자격이 박탈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기를 원할 시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
**제 7 조            투표 권리**

**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 투표권**

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도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.



**제 2 항 투표권 유보 및 추인**

우리 교회의 회원으로서 질병이나 여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3개월 동안 50% 이상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은 자는 투표권이 유보된다.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.

**제 3 항 투표권 위임**

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기에게 서면(전자 통신에 의한 문자도 인정)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. 위임자는 성도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**제 2 장 성도총회 (Congregational Assembly)**

**제 1 조 총칙**

**제 1 항** 본 규약 제 1 장 제 2 조에 명시된 회원으로 구성된 교회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 기관이다.

**제 2 항** 회원 각자는 성도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, 총회에서 동등한 발언권, 투표권, 선거권, 그리고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제 3 항** 우리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보수, 급여 또는 사례를 받는 자는 피선거권이 유보된다.

**제 4 항**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.

**제 5 항** 담임목사 부재 시 임시 의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.

**제 6 항** 모든 기록은 서기가 담당한다.

**제 2 조 정기 및 임시성도총회**

**제 1 항** 정기성도총회 (또는 성도사무총회라 한다)는 연 1 회 10 월중에 개최하며, 당해 연도의 결산 및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. 아울러 신년도 예산안,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는다.

**제 2 항** 임시성도총회는 의장의 요청이나 제직회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- 제 3 조 소집공고**
- 제 1 항** 정기성도총회는 의장 명의로 안건, 일시, 그리고 장소 등을 1 주일 전에 공고한다.
- 제 2 항** 임시성도총회는 의장 명의로 안건, 일시, 그리고 장소 등을 1 주일 전에 공고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24 시간 이전의 통보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4 조 안건상정**
- 본 규약 제 2 장 제 7 조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성도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- 제 5 조 회의 성원 및 유회**
- 정기 및 임시성도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. 이때,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인원에 포함된다.
- 제 6 조 의결 정족수**
- a. 본 규약 제 2 장 제 7 조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은 투표인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- b. 그 이외의 사항은 투표인의 과반으로 한다.
- 제 7 조 중요 사안**
- 제 1 항** 교회 헌법, 내규 및 운영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내용 통보
- 제 2 항** 예산안 변경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 시
- 제 3 항** 담임 목회자의 청빙, 사임 및 해임에 관한 안건
- 제 4 항** 회계 감사 및 위원회 구성원 선출 시
- 제 5 항** 기타 중요 사안
- 제 8 조 표결 및 개표 원칙**
- 제 1 항** 인사 문제와 관련된 모든 안건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, 기타 안건의 표결은 성도총회에서 정한다.
- 제 2 항** 무기명 비밀투표의 개표 시 의장은 회원 중 2 인을 지명하여 개표, 감표(監票) 및 집계를 담당케 한다.
- 제 3 항** 개표 결과의 집계발표는 서기가 담당한다.

## 제 3 장 교회 직원

### 제 1 조 담임목사

#### 제 1 항 자격

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하여 안수받고 교단에 등록된 목사

#### 제 2 항 임무

- a.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.
- b. 모든 예배, 행사, 각종 집회, 각종 사경회, 각종 세미나 또는 신앙 훈련 등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주님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사역이 되도록 인도한다.
- c. 교인들, 교회 직원과 기관 및 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한다.
- d. 성도총회, 제직회 및 교회 각 부설기관의 의장이 된다.

#### 제 3 항 대우

- a. 사례, 목회 활동비 지원, 연금, 건강보험 등은 남 침례교단의 통례에 따른다. 이밖에 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정한다.
- b. 유급 휴가는 1 년에 2 주이며, 그 이상이 필요할 때에는 제직회에서 정한다.
- c. 매 5 년마다 그 해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6 주의 안식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제직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 4 항 정년

정년은 65 세로 한다.

#### 제 5 항 사임

- a. 목회를 사임할 경우 1 개월 전에 공지한다.
- b. 성도총회 결의로 처리한다.
- c. 사임시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5,000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 6 항 해임

교리적, 윤리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목회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에서 결정한다.

- 제 2 조        부목사**
- 제 1 항        자격과 임명**  
    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하여 안수받고 교단에 등록된 목사인 자로, 필요 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
- 제 2 항        사임 결정**  
    사임할 경우는 담임목사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제직회에서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.
- 제 3 조        전도사**
- 제 1 항        자격과 임명**  
    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출석하거나 졸업한 자로, 필요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.
- 제 2 항        사임 결정**  
    사임할 경우는 담임목사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제직회에서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.
- 제 4 조        교회 직원**  
    교회 직원은 목회행정 직원과 일반행정 직원으로 구분한다.
- 제 1 항        목회행정 직원**  
    목회행정 직원이란 부목사, 교육목사, 음악목사, 전도사 및 신학훈련이나 성경교육을 받은 자로 교회에서 목회행정과 예배를 위한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된 자를 말한다.
- 제 2 항        일반행정 직원**  
    일반행정 직원은 교회 비서, 성가대 지휘자, 찬양 인도자, 반주자, 관리인, 보육인 등 예배와 교회 사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를 말한다.
- 제 3 항        임명**  
    일반행정 직원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담임목사가 검토하여 임명한다.
- 제 4 항        사임 또는 해고**  
    목회행정 직원과 일반행정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불성실하면 제직회에서 합의 또는 결의함으로 사임을 권고하거나 해고한다.

**제 5 조        일반 직분자**

**제 1 항        직분의 종류**

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다. 안수집사는 본 교회 회원 25 명당 1 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 2 항        집사의 자격**

집사는 교회의 청지기로서 봉사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도행전 6 장 1 절에서 7 절까지와 디모데 전서 3 장 8 절에서 13 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.

**제 4 장        안수집사 (Deacon)**

**제 1 조        총칙 및 자격**

본 교회는 침례교회로서 안수집사는 영적으로 훈련되어 영적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.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를 안수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.

**제 1 항**        부부가 본 교회에 충성된 교인으로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남자

**제 2 항**        제 3 장 제 5 조 제 2 항에 준한 자

**제 3 항**        주일성수와 온전한 십일조와 헌금 생활의 본이 되며, 공예배와 성경 공부 등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.

**제 4 항**       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3 년 이상을 시무한자 (단,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년이 되지 않아도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)

**제 5 항**        침례교회에 속한 타 교회에서 임명한 안수집사로 본 교회 등록 후 1 년이 경과한 자

**제 6 항**        타 교회 및 교단에서 서리집사로 5 년 이상 시무한 자 중 본 교회 등록 후 1 년이 경과한 자.

**제 2 조        피택**

**제 1 항**        제직회는 안수집사 자격 조건을 구비한 회원들의 명단을 선출 1 개월 전까지 확정해서 공고한다.

**제 2 항**       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된다.

**제 3 항**        회원은 투표용지에 나열된 후보자들에 한해서 복수로 투표할 수 있다.

- 제 3 조            교육**  
안수집사로 피택된 자들은 3 개월간 소정의 집사교육 과정을 마친다
- 제 4 조            총회의 인정 및 안수**
- 제 1 항**        피택된 집사는 교육을 받은 후 총회나 지방회 한인 남침례회 총회에서 시험관으로 지명된 목사(또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자)로 부터 구두시험을 받아야 한다. (4 명 이상)
- 제 2 항**        본 교회 담임목사가 안수 위원장이 되며 안수위원은 지방회와 총회에서 파송되는 목사가 된다.
- 제 3 항**        제 4 장 제 3 조의 교육 이후 시기를 정하여 안수식을 행한다.
- 제 5 조            임기 및 임무**
- 제 1 항        시무임기**
- a. 시무임기는 3 년이며, 임기가 끝나면 성도총회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다.
- b. 안수집사의 정년은 70 세로 한다.
- 제 2 항        임무**
- a. 목회자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다.
- b.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한다.
- 제 6 조            시무정지 또는 해임**
- 제 1 항        시무정지**
- a. 질병이나 여행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예배를 지속적으로 불참석하거나 십일조와 리더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등, 영적인 면과 삶에서의 모습이 리더십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
- b. 제 4 장 제 5 조 제 2 항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
- c. 제 1 장 제 3 조에 명시된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
- 제 2 항        복권**
- 시무정지의 경우 1 년 또는 그 이상의 자숙 기간을 가진 뒤에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아 복귀할 수 있다.

**제 3 항 해임**

제 1 장 제 6 조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성도총회 투표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.

**제 4 항 사임**

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안수집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임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한다.

**제 5 장 서리집사 (Deacon Acting)**

**제 1 조 자격**

**제 1 항** 본 교회 회원으로 출석한지 2 년이 넘은 침례교인

**제 2 항** 타 교회에서 이미 집사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 년 이상이 된 자

**제 3 항**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일성수를 비롯하여 각종 공적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출석하며, 교회 봉사, 헌금 생활, 그리고 가정 생활 등에 있어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

**제 2 조 임무**

**제 1 항** 목회자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다.

**제 2 항** 교회 내 각종 부서 및 자치기관의 책임을 맡아 봉사한다.

**제 3 항** 제직회, 기타 교회 행사 및 모임,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, 전도 및 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.

**제 3 조 선출방법**

**제 1 항** 담임목사는 추천된 서리집사 후보자에게 수락 여부를 사전에 묻고, 그 결과를 제직회에 통보한다.

**제 2 항** 서리집사 후보는 정기성도총회에서 인준한다.

**제 4 조 임기**

임기는 1 년으로 하되, 매년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재임이 가능하다.

## 제 6 장 장로 및 권사

### 제 1 조 총칙

남침례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는 명예직으로서, 교회의 부흥 발전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안수 없이 임명받는 직분으로 세운다.

### 제 2 조 임무

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신앙적인 도움을 준다.

### 제 3 조 자격, 임명 및 교육

#### 제 1 항 자격

- a.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되 주일성수와 헌금생활을 성실히 행하는 자.
- b. 서리집사로 3 년 이상 교회에 봉사하였으며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자.
- c. 위로와 권면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.

#### 제 2 항 장로의 임명

- a.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섬긴 후 70 세 이상이 되면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.
- b. 안수집사직을 거치지 않았어도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.

#### 제 3 항 권사의 임명

서리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섬긴 후 60 세 이상이 되면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.

#### 제 4 항 교육

장로 또는 권사로 내정된 자는 임명받기 전, 소정 기간 교회가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 5 항 전입

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장로 및 권사는 교회 등록 1 년 후,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제직회를 거쳐 임명하여 봉사하도록 한다.

## 제 7 장 제직회 (Board Meeting)

### 제 1 조 총칙



- 제 1 항** 교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성도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 조정하는 기구이다.
- 제 2 항**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.
- 제 3 항** 담임목사의 부재시 임시 의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.
- 제 2 조**       **구성**

  - 제 1 항** 담임목사, 안수집사 그리고 팀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  - 제 2 항** 담임목사는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, 목회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권이 유보되며, 필요시 이석을 요청받을 수 있다.
- 제 3 조**       **임무와 역할**

  - 제 1 항** 성도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을 사전에 논의한다.
  - 제 2 항** 제직회원 3 분의 1 의 요청으로 임시성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제 3 항** 회원의 투표권을 사전 심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성도총회 개최 전에 작성한다.
  - 제 4 항** 성도총회에서 발의된 제반 안건에 대해 심의, 조정한다.
  - 제 5 항** 기타 내규에 규정된 제반 위임 사항을 논의, 결정한다.
- 제 4 조**       **정기 및 임시제직회**

  - 제 1 항**       **정기제직회 소집**

정기제직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제 2 항**       **임시제직회 소집**

임시제직회는 담임목사나 제직회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.
  - 제 3 항**       **의결**

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, 투표인의 3 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.

**제 8 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회행정**

**제 1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칙**

**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격**

서기, 회계, 감사 및 행정직의 자격은 본 교회의 회원으로 한다. 매년 제직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 이들의 추가 후보자를 성도총회시 출석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.

**제 2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정대리인**

비영리단체로서 플로리다 주에 등록되는 교회의 법정대리인은 담임목사, 원로목사, 회계(재정팀장), 서기, 안수집사(1 인)로 구성한다.

**제 2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기**

**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선출**

서리집사 중 성도총회에서 매년 선출하며 최대 3 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.

**제 2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무**

- a.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기록 보관한다.
- b. 성도총회와 제직회의 서기를 겸임한다.
- c. 회원 명부 보관, 회원 입회, 이명, 사망일자 및 침례의 기록 등을 보존한다.
- d. 교회의 모든 공문의 기록 원본은 교회의 사무실에 비치한다.
- e. 교회에 속한 모든 계약, 증서, 법정서류 등의 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 된다.

**제 3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계(재정팀장)**

**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선출**

회계(재정팀장)는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 중 매년 성도총회에서 선출하며, 최대 3 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**제 2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무**

- a. 본 교회에 헌납된 현찰 및 기타 재산들을 접수 보관한다.
- b.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지출 결정 사항에 의거해 청구서, 계산서 그리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c. 회계 보고서는 매 분기 감사를 받게 되며 분기별 예산 집행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해야 한다.

- d.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부서 및 항목별로 기록, 매년 정기성도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e. 교회에 속한 모든 계약, 증서, 법정서류, 회계 보고서 등의 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 된다.

**제 3 항    관리**

- a. 은행의 서명권한은 재정팀장, 당 회계연도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은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 중 1 인, 그리고 담임목사가 된다. 위 3 인은 은행 구좌에 접속 권한을 가진다.
- b. 제 8 장 제 3 조 제 3 항 a. 의 서명 권한의 변경은 성도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.

**제 4 조    감사**

**제 1 항    총칙**

- a. 성도총회에서 2-3 인을 선정한다.
- b.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- c. 결원 시 제직회에서 선출하며 잔여임기는 당 회계연도에 한한다.

**제 2 항    임무**

- a. 매 분기별 회계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.
- b. 당 회계연도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성도총회에 보고한다.
- c. 당 회계연도 감사 결과는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보존한다.

**제 5 조    회계연도**

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 월 1 일에 시작하여 익년 10 월 31 일에 끝난다.

**제 1 항    회계운용**

- a. 교회 재정의 성서적 원칙은 십일조와 기타 헌물에 의거한다.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책정과 채택이 있다.
- b. 교회의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, 자산, 현찰,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가 소유 관리한다.
- c. 교회에서 접수한 지정된 헌납은 헌납인의 원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.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성도총회의 결의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d. 채무가 필요한 경우 성도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
## 제 9 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원회 (Committee)

### 제 1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칙

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도총회를 통해 구성한다.

제 2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원회의 기간과 목적은 사안에 따라 정한다.

제 3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각 위원회는 5 인 또는 7 인으로 선출한다.

제 4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.

## 제 10 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회 기관 및 부서

### 제 1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칙

교회의 모든 기관 및 부서는 목회와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.

### 제 1 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팀장

각 팀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### 제 2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남/여 전도회

남/여 전도회는 각각의 규약에 따른다.

### 제 3 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부모회

학부모회는 정규 모임 외에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의 사역직원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 11 장            교회의 성례

### 제 1 조            침례

제 1 항    침례식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침수함으로 고백하며 본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.

제 2 항    집례는 담임목사가 한다.

### 제 2 조            주의 만찬

a. 담임목사가 집례하고 집사와 장로들이 보조한다.

b.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.

## 제 12 장            헌법 규약의 개정 및 부칙

### 제 1 조            개정 총칙

제 1 항    본 헌법과 규약은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이 가능하다.

제 2 항    개정 제의된 내용은 의장 명의로 1주일 전에 공고,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3 항    교회 헌법 및 규약은 연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 4 항    우리 교회 회원 누구나 헌법 및 내규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. 개정 및 심의 요청시 제직회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성도총회에 상정한다.

### 제 2 조            부칙

#### 제 1 항    일사부재리 원칙

성도총회에서 기각된 안건은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재 상정할 수 없다.

#### 제 2 항    비 규정 사항

본 헌법 및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관례 및 전례에 따른다.

#### 제 3 항    효력과 상실

개정된 교회헌법 및 규약은 성도총회 가결 즉시 제정 선포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와 동시에 구 헌법과 내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2023 년 7 월 9 일

헌법개정위원회: 나이삭, 전영임, 유상호, 이재정, 이정운, 최성미, 최은영

위의 규약은 2023 년 7 월 9 일 탐파 새빛교회의 성도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.

서 기: 전영임

서 명:



담임목사: 김섭리

서 명:

